제323회 남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 1 차 도 시 교 통 위 원 회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체결안

검 토 보 고 서

2026. 10. .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체결안

1. 제안이유

○ 2027년 상반기부터 진접선 증회 운영을 위해 진접선 운영협약을 인력 채용 등을 고려하여 2026년 하반기(11월)에 갱신하고자 함

2. 협약 개요

○ 협 약 명 :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협약

○ 협약기관 : 남양주시, 서울교통공사

○ 협약시기 : 2027. 3. 19. ~ 2030. 3. 18.(3년) ※ 당초 협약기간은 5년

3. 변경사항

○ 당초 협약에서 규정된 권리의무는 유지하되 여건변화에 따른 변경사항(인력 증원, 경비 배분방식 변경, 시설사용료 적용범위 등) 포함하여 협약 갱신

○ 협약 변경사항 반영으로 운영비는 약 48억원 증가

[참고: 주요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1	운영인력(명)	118	160(증회 운영 15명 포함)	증 42명
2	경비 배분 방식	차량배속 비율/인력비율	거리비율 배분	하남선,별내선
3	운영수수료	3%	5%	타 연장노선도 협약갱신 시 동일하게 적용
4	시설사용료 적용범위	차량기지 시설	승무사무소, 관제 시설 등으로 확대 적용	
5	혼잡도 원인자 부담 원칙 명시	-	진접선 의한 본선 혼잡도 증가시 비용 청구	
6	추가열차운행	-	20회	선시행 8회 (2026. 11.1.)

4. 향후계획

○ 2026. 11. : 협약체결 및 2027년 본예산 편성

5. 검토의견

❍ 본 협약 체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과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체결에 대한 의결(동의)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 협약 개요와 세부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갱신 계약은 지난 제276회 임시회(2021년 2월) 시 당초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및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안 이후 서울교통공사와 2027년 3월부터 2030년 3월까지 3년간 협약을 맺어 진접선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협약서안은 총 4장 35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는 총칙과 위수탁기간, 열차운행 간격, 위수탁기관의 의무와 권한 등 핵심사항의 내용이 있으며, 제2장에는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과 제4장에는 위험배분 등과 기타 및 협약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당초 2021년도 협약안과 금번 협약안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비교 분석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 검토 의견으로는 진접선의 원활한 운행과 열차 증회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이번 갱신 협약안은 향후 수년간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인 만큼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의 균형성 측면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협약서(안) 비교 현황

※ 2021 협약서안 하단 첨부

구 분	(당초) 2021년도	(변경) 2026년도	비 고
1. 협약 명칭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및 사업비 부담 협약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2. 운영인력 규모	총 106명 (운전취급시12명추가, **최대118명**)	**총 160명** (기본145명+추가운행15명)	42~54명 증원으로 인건비 급증
3. 열차 운행 및 추가운행 (증회)	기본 시격: 혼잡 10~12분, 비혼잡 20~25분	기본 시격 유지(혼잡10분/비혼잡20) 외 **제6조 신설**: 추가 열차 운행 20회. 단, 공사의 경영정책·근로조건 변화 시 일방적 중단·조정 가능	시가 인건비 전액 부담함에도 공사 취소권 보유로 불균형
※ 1일 열차 운행	158	150 (11.1. 8회 증차예정)	27상반기 중 12회 증차 예정
4. 서울 본선 혼잡도 증가 비용 전가	관련 조항 없음 (0원)	**제9조 제5항·제6항 신설**: 본선 혼잡도 3개월 이상 증가 시 추가 차량 구입·개조·대책 수립 등 모든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	창동 차량기지가 우리시로 이전됨에 따른 교통유발은 당연한 상황으로 혼잡도 비용을 우리시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
5. 위탁수수료율 (공사순수마진)	3.0%	5.0% (2.0%p인상)	모수가 커진 상태에서 마진율까지 올려 교통공사 이윤 증가
6. 일반관리비 (본사간접비보전)	5.0%	5.0%	동일 유지
7. 시설사용료 및 유지비 부과 범위	차량기지 등 진접선 관련 시설 실비 수준	**제14조제1항8호** 승무사무소·관제센터 추가, 본선 선로유지비 신설, 산정 용역비 부담 명시	서울 시내 본선 인프라 유지비 및 평가 용역비 포함
8. 불가항력에 의한 시설복구 비용부담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상호협의 또는 중재법에 의한 해결 등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당해 부분을 위탁하는 위탁기관이 부담	21년에는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중재를 통해 시비(귀책)를 가릴 수 있도록 보장했으나, 26년도에는 우리시가 부담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및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안

의 안 번 호	468

제출연월일 : 2021. 1. 20.
제 안 자 : 남 양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협약」 제9조에 의거 남양주시와 서울교통공사 간 진접선 운영관련 역할 및 운영비 부담 등의 내용을 정하여 향후 진접선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 약 명 :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및 사업비 부담(´21. 2월 협약 체결 예정)

○ 협약내용 : 진접선 운영에 관한 협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권리·의무	서울교통공사	관제, 여객운송, 차량정비 및 개통 전 사전준비 (종합시험운행, 영업시운전)	관제, 승무, 차량
	남양주시	운영비 부담, 역무운영(남양주도시공사 위탁)	역무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 유지보수는 「철산법」 의거 한국철도공사 수행, 우리시는 시설사용료 납부(향후 시설사용계약 체결)

○ 운 영 비 : 연간 297억원(운영비+시설사용료) 소요예상

구분	당초(2019년)	조정(2021. 1.)	증감	조정사유
합 계	**45,400**	**29,684**	**△15,716**	운영인력 조정 243명→106명 역무직영에 따른 비용절감
운영비(서울교통공사)	35,221	19,505	△15,716	
시설사용료(국가철도공단)	10,179	10,179	-	

3. 향후계획

○ ´21. 2. : 운영협약(안) 시의회 의결 및 협약 체결

○ ´21. 3. : 남양주도시공사 역무운영 조직 신설

○ ´21. 10. ~ 12. : 종합시험운행 후 개통

□ 붙임 : 운영 협약서(안)

붙임 **운영협약(안)**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및 사업비 부담 협약서(안)

남양주시(이하 “남양주시”)와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는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확정안건 의결(이하 “확정안건 의결”),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이하 “건설협약서”) 제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가 철도시설인 진접선 복선전철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남양주시”와 “교통공사”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은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관제·승무·차량)사업”을 말한다.
2. “본 사업시설”은 본 사업과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하며, 협약 체결일 이후 협약당사자들의 합의로 추가 또는 변경된 시설을 포함한다.
3.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는 “남양주시” 및 “교통공사”를 말한다.
4. “사업비 부담기관”이란 “남양주시” 를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서울교통공사” 를 말한다.
6. “협약기관”이란 “사업비 부담기관” 및 “운영기관”을 말한다.
7. “운영경비”란 본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시설 및 장비 임대료, 수탁재산 취득비 등 모든 비용과 일반관리비, 운영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비”란 본 사업의 운영경비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기존구간”이란 운영기관이 기 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 1-8호선을 말한다.

10. “수탁재산”은 “본 사업”과 관련되어 남양주시 부담으로 취득한 시설, 유형자산, 지적재산권, 특허권, 구분지상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11. “영업개시일”이란 진접선 복선전철의 영업운영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12. “일반관리비”란 인건비, 경비, 수탁재산 취득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운영수수료”란 인건비, 경비, 수탁재산 취득비 등 모든 비용과 일반관리비 합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정산보고서”란 사업비 등을 검증 및 확정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합의된 절차 업무수행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말한다.
15. “사업연도”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말한다. 단,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사업종료 연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16. “불가항력”이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협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서 협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본 협약의 규모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관제·승무·차량) 사업
2. 사업구간 : 당고개역(4호선)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3역, 14.892km)
3. 사업범위 : 사업구간 관제, 승무, 전동차(5편성/50량) 유지보수 업무

제4조(협약기간) ① 본 사업의 운영 기간은 개통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관은 제1항의 사업기간 만료 1년 전까지 협약 상대방에게 협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기관 간 협의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열차 운행 간격) 본 사업의 열차 운행 간격은 평일기준 RH 10분~12분, NH 20분~2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6조(운영인력) ① 본 사업의 운영인력은 총106명(관제 6명, 차량 43명, 승무 57명)으로 하며, 운영기관은 총 운영인력 범위에서 직렬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협약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하에 교통공사가 운전취급업무를 수행할 경우 12명을 추가로 포함하여 운영인력은 총118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운영인력계획은 제11조(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의 계획에 포함한다.

③ 기존구간의 근로조건, 근무환경 등 근무제도 변화 등으로 본 사업의 운영인력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운영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진접차량기지(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완공에 따라 열차운영계획 변경시 운영인력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운영인력을 조정 할 수 있다.

⑤ 협약기관은 필요시 상호 합의하여 운영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⑥ 운영인력의 현업사무소는 법령 등에 따라 비상사태 발생시 승객대피 및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조성하고, 근무환경을 위해 지상화를 원칙으로 하며, 동 시설 설치 및 개선에 남양주시와 교통공사는 적극 협조한다.

제7조(운영기관의 업무범위)

① 운영기관의 본 사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접선 복선전철 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운송
2. 진접선 복선전철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3. 진접선 복선전철 개통을 위한 사전준비(종합시험운행, 영업시운전 등)
4. 제1호 내지 제2호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업무

② 제1항의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부담기관의 의무 및 권한) ① 사업비 부담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 사업비 부담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제13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의 사업비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이 기존구간과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부담기관은 본 사업운영과 관련한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고 운영기관에 다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2. 정산보고서
3. 기타 본 사업운영에 관련된 사항

④ 사업비 부담기관은 점검 결과 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운영기관의 의무 및 권한)

① 운영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 운영기관은 제13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의 사업비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지방공기업법」및 운영기관의 회계규정 등 관계 법령

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8조(사업비 부담기관의 의무 및 권한) 제4항에 따라 사업비 부담기관이 요구한 조치가 부당할 경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협의회 설치) ① 본 사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은 운영협의체로서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① 운영기관은 매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운영계획" 이라 한다)을 관련법령 및 운영기관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연도 운영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사업비 부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운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부담기관은 운영기관의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 본 사업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인건비
 가. 본 협약에 따른 운영인력 인원수에 운영기관 직렬별 평균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근무형태는 교대 또는 통상으로만 적용한다.
 나. 운영기관의 급여 관련 제규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 등을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을 포함한다.
 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 본 사업에 근무한 기간만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2. 경비 등 : 본 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운영기관 회계 관련 규정에 명시되는 비용으로 실비 반영한다.
3. 수탁재산 취득 및 제반비용 등 : 본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탁재산 취득비용 및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반영한다.
4. 일반관리비 : 본 사업의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경비, 수탁재산 취득비 등의 합계액의 5%를 적용한다.
5. 운영수수료 : 사업비 부담기관이 운영기관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 경비, 수탁재산 취득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3%를 적용한다.
6. 시설사용료 등 기타비용 : 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 소유의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본 사업구간 운영인력 이외의 인력을 활용하여 법령과 사업비 부담기관 요구 등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 발생하는 비용 등은 실비(부대비 포함)로 반영한다.(부가가치세 별도) 단, 사용료는 관련법령 및 관련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비 부담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운영기관은 매 분기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비 부담기관에 차 분기 사업비를 청구하고, 사업비 부담기관은 매 분기 개시 후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개통 시에는 협약기관 간에 협의하여 지급한다.

② 본 사업구간의 사업비 집행기준은 기존구간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사업비 청구 및 정산) ① 운영기관은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익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부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매 분기마다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이하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비 부담기관에 제출하며, 사업비 부담기관은 정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승인해야 한다.

③ 협약기관은 매분기 정산결과에 따라 승인완료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 부담기관은 부족금을 운영기관에 지급하고, 운영기관은 집행잔액을 사업비 부담기관에 반환한다.

④ 사업비 부담기관은 운영기관이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부담기관의 정산서 승인기한은 보완·시정된 정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 운영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협약기관의 합의로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합의된 절차 업무수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사업비 부담기관에 제출, 사업비 부담기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 정산을 시행한다.

제15조(사업비 지급 지연이자) ① 사업비 부담기관은 제13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급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다.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미지급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지급지연 사유가 운영기관에 있는 경우
3. 사업비 부담기관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사업비 부담기관이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사업비가 사업비 부담기관의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협약당사자 간에 사업비 지급시기를 달리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5. 행정소요일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체되는 경우

제16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탁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협약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기관은 본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비 부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운영기관은 이에 관하여 사업비 부담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상 사유로 수탁재산 변경 등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은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수리한계 초과 등으로 발생하는 불용 대상 수탁재산에 대하여 사업비 부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불용처리 후 사업비 부담기관에 반환한다. 다만, 사업비 부담기관 미수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비용은 사업비 부담기관이 부담한다.

④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제23조(분쟁의 해결)에 따른다.

제17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운영기관은 본 협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재산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원상복구(일반적인 마모 및 감가상각은 제외)하여 사업비 부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는 협약기관 간 또는 사업비 부담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공동으로 본 사업에 관한 점검 및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수인계하는 수탁재산은 시설, 비품,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예비부품 재고와 관리 중인 본 사업관련한 문서, 기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④ 운영기관은 본 협약 종료시 차기 운영기관에 본 사업시설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18조(보험가입) 운영기관은 법령 등에 따라 기존구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종 보험에 가입한다.

제3장 위험배분 및 분쟁의 해결

제19조(위험배분원칙) ①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손해 및 위험 중 귀책사유가 협약당사자에게 있을 경우 당해 손해 및 위험을 발생시킨 당사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위험(책임)배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합의한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제20조(운영기관 귀책사유 및 처리) ① "운영기관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운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구간의 운영을 24시간 이상 연속하여 중단할 경우
2. 운영기관이 해산 및 청산할 경우(단, 운영기관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등
3. 관계 법령 및 본 협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② 운영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기타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운영기관이 부담한다.

제21조(사업비 부담기관 귀책사유 및 처리) ① "사업비 부담기관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사업비 부담기관이 운영기관에게 직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2. 사업비 부담기관이 관계법령 및 협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등

② 사업비 부담기관 귀책사유로 사업비 증가 및 기타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사업비 부담기관이 부담한다.

제22조(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시설복구 등의 비용 부담) 운영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시설물의 피해복구 비용, 운영 손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해당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제23조(분쟁의 해결)에 따른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60일 이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고, 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4조(분쟁금액의 지급방법) ① 협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협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된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협약당사자는 일부 이의가 있는 금액을 보류하고 나머지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다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금액은 분쟁대상 총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분쟁의 해결 시까지 보류된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기간에 대하여 제15조(사업비 지급 지연이자)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및 협약의 변경 등

제25조(기타사항) ① 법령 제·개정 및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점검, 개량, 추가, 변경되는 시설·설비 등의 비용은 진접선 소유자가

부담하고 추가 인력투입에 따른 비용은 사업비 부담기관이 부담한다.

②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르고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본 협약서의 기존구간 적용 시 서울도시철도 1~4호선과 5~8호선의 기준이 상이할 경우 1~4호선 기준을 적용한다.

④ 운영기관은 사업비 부담기관이 담당하는 역무업무의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수행을 위해 운영기간 중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광역교통정책으로 시행하는 진접선 복선전철 개통을 위해 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 의거 시행하는 관제사 및 기관사 운전업무 실무수습교육, 종합시험운행, 전동차 시운전 지원 등으로 투입되는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정책상 필요로 특별히 인정하는 인건비에 포함하여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6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본 협약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기관 간 합의 없이는 본 협약상의 권리를 양도 및 이전하거나 그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27조(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내용을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협약기관 간의 합의로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② 본 협약 체결 후 협약기관 간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별도의 변경 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 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 한 경우
2. 운영기관이 본 협약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비 부담기관이 본 협약 제2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사업비 부담기관이 제13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의 사업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18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②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본 협약과 관련해서 고용된 근로자는 본인 희망 시 새로 수탁 받는 기관에 고용승계가 되도록 협약 당사자는 노력한다.

제29조(협약해지 등에 따른 보상) ① 사업비 부담기관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 등이 된 경우 운영기관의 손실금액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 등이 된 경우 사업비 부담기관의 손실금액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협약이행 및 효력발생) ① 본 협약내용은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021년 월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남양주시 시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조 광 한 (직인)	**김 상 범** (직인)

붙임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와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기관위임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업무제휴 또는 각종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후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해 개별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3.>
1.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2. 시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담당부서 자체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6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 및 의원은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하여 비밀이 필요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